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88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김현정・이건태・김문수

이정문・윤준병・남인순

김태선 · 강준현 · 어기구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 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 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 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유족 중 1인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과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유족 중 1인은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 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 | 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 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 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 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 •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 른 6 · 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사 람은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 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 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개 정 아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 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 을 기리고 회원 상호 간의 상 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 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 하여 대한민국6 · 25참전유공자 회(이하 "6 · 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른 6 · 25전쟁 참전유공자와 참 전유공자의 사망시 유족 중 1 인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과 참전유공자의 사 망시 유족 중 1인은 각각 6·2 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 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 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u>이 될 수 없다.</u>